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9.4.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18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3년 9월 4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이용 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며,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및 요금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내용

- (1) 기 시행중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21조의4 및 별표3)
- (2)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교 제4호)
- (4) 승용차공동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주차요금 50퍼센트 할인조문 신설(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교 제22호)

(5)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제명 및 내용 변경

### 3. 검토보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의 부과 단위를 변경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주차요금 할인 조문을 신설하며,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21조의4를 신설하여 기 시행중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현행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4호에서는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였음.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7호 나목의 제11호를 제12호로, 제12호를 제13호로, 제14호를 제15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다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8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2호에서는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과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는 등 주민의 부담경감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사항은 20개 자치구, 5분제 요금은 15개 자치구,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관련 사항은 12개 자치구가 개정을 했거나 입법 예고 중이며, 주차요금 조정률은 60%인 강북구를 포함하여 12개 구가 50%이상으로 개정을 했거나 입법 예고 중임.

※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입법예고 포함)

5분제 요금	승용차 공동이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비고
15개	12개	20개	13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